



시 보



제1637호 2024. 3. 18.(월)

고 시

- 2024년 목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----- 2

공 고

-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----- 3
-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---- 5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2024년 목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
2024년 목포시 대산1~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18일

목 포 시 장

1. 책임수행기관: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
2. 지적재조사지구 명칭: 대산1~3지구
3. 사업위치 및 사업량
 - 가. 사업위치: 산정동 95-9번지 일원 (가톨릭 목포성지 및 목포여고 일원)
 - 나. 사업량: 1,025필지 / 175,866.1㎡
4. 위탁 업무
 - 가.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
 - 나.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
 - 다. 경계설정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,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
 - 라. 경계점표지 설치, 경계확정측량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
 - 마. 지적재조사지구의 내외 경계 확정, 측량성과물 작성
5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(☎ 061-270-8118, -341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

「공직선거법」 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1일

목 포 시 장 인

1. 선거인명부 열람

가. 열람기간

2024년 3월 24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3일간 (공휴일에 불구함)

나. 열람시간 :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(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)

다. 열람장소

장 소 명	소 재 지	비 고
동 행정복지센터	「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규정한 동주민센터 소재지	23개소

라.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주소 : 목포시청 (<http://www.mokpo.go.kr>)

마. 인터넷 열람방법

- 1) 목포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팝업창(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 및 이의신청) 선택
- 2) 자신의 성명, 생년월일 입력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
→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함

2.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

가. 확인기간

2024년 3월 30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12일간 (확인시간 제한없음)

나. 확인대상 : 선거인명부 등재여부, 등재번호, 투표소의 위치

다. 인터넷 확인 홈페이지 주소 : 목포시청 (<http://www.mokpo.go.kr>)

라. 인터넷 확인방법

- 1) 목포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팝업창(선거인명부 인터넷 확인) 선택
- 2) 자신의 성명,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가능
→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함

목포시 공고 제 2024 - 522호

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8일

1. 개정이유

-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원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기준을 마련.
-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들의 2년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단원의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기준 마련 - 조례 제9조의 2 (우수선수 영입비)
-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받은 단원의 임용기간 예외 기준 마련 - 조례 제4조(임용)

3. 관련법령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 (직장체육의 진흥)
-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7조 (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)

4. 개정조례(안) : 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입법예고 기간 : [21일간]

7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
8.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 없음

9. 예산사항 : 비용추계서 1부

10. 의견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8일까지 목포시장(스포츠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처 : 58601,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23, 목포종합경기장 16GATE,
2층 정문입구 왼쪽 (대양동)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251), 직접방문 등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9조의2 우수선수영입비를 지급받은 단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우수선수 영입비) ①시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② 우수선수 영입비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임용) ① (생략)</p> <p>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한다. <후단 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임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. 다만, 제9조의2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단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우수선수 영입비) ①시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우수선수 영입비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조 례 명 :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 _____

○ 전 화 번 호 : _____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관련 법령

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2. 8. 11.] [법률 제18808호, 2022. 2. 3., 일부개정]

- 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·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7.>
-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 <개정 2009. 3. 18., 2012. 2. 17.>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지도·감독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

[시행 2022. 8. 11.] [대통령령 제32863호, 2022. 8. 9., 타법개정]

- 제7조(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)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(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)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. <개정 2014. 7. 7.>
-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(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)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공공단체로 한다. <개정 2014. 7. 7.>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

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7. 7., 2020. 8. 5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7. 7.>

1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,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
2.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
3.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

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,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·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4. 7. 7.>